

하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연월일 : 2026. 3. .

제 출 자 : 하남시장(자원순환과)

1. 제안이유

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라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,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개정 (안 제1조 및 제2조)
 - 조례의 목적을 자원순환 촉진으로 구체화 및 상위법 조항 삭제에 따른 정비
- 나.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삭제 (안 제3조)
 - 상위법 제7조 삭제에 따른 근거 규정 삭제 필요
- 다. 의류수거함의 관리·운영 기준 도입(안 제6조의2)
 -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한 운영 관리자를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변경 사항의 반영을 통한 현행화와 함께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,
-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설치기준, 수거방법 및 연령별 신체적 특성, 접근성 및 이용 안정성 고려하여야 하는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-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됨.